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방위 정의에 핵 방호 명시〉

■ 신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61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원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3. 08. 23.
3. 회 부 일 : 2023. 08.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민방위를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1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 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u>방공(防空)</u> ,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1. ----- ----- ----- ----- ----- <u>핵</u> 방호(防護), <u>방공(防空)</u>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 ----- ----- ----- -----.
1. <u>대피호</u>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1. <u>대피호(핵 대피소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2. 3. (생략) ② ③ (생략)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인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민방위 차원에서의 핵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민방위의 정의에서 방공(防空), 방재(防災) 등의 의미는 화학무기(화학탄), 생물학무기(세균, 독소 등) 및 재래식 무기(미사일, 포탄)뿐만 아니라 핵무기(원자폭탄 등)와 그로 인한 방사능을 모두 포괄하는 적대세력에 의한 공격으로부터의 대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피호 또한 비상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습에

대한 방호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민방위 대응 강화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민방위 대비 태세와 대피호 관련하여 핵무기(원자폭탄 등) 방호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

문 의 처
02)6788-5349

1) 행정안전부도 같은 입장임.